

# 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연대: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140-5호 3층 / 전화 711-0835-9 / 전송 711-0834 / 홈페이지 [www.konkang.or.kr](http://www.konkang.or.kr)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출입기자  
발 신 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정은일)  
당 대 조경애 (건강연대 사무국장) ( 711-0835-9 )  
제 목 의료보호법 개정시 의료보호 2종의 법정본인부담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  
날 째 2000. 12. 18. (총 2 쪽)

## [성명서]

### 국회는 의료보호법 개정시 의료보호 2종 본인부담을 폐지하라 ! 의료보호 2종 법정본인부담 20%는 의료보험과 동일

12월 18일 임시국회는 의료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올바른 의료보호법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시한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현재 의료보호 2종 대상자는 법정 본인부담금 20%를 포함하여 각종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인해 전체 진료비중 46%를 본인부담하고 있다. 이는 의료보험 대상자들이 법정본인부담 20%를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의료보호 2종 대상자의 법정 본인부담금 20%를 폐지한다고 해도 2종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무료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정 본인부담금이 폐지되어도 총 진료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의 주머니에서 지불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정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2종 법정 본인부담금을 없애면 의료이용의 필요가 없음에도 의료이용을 하게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 보인다.

가난한 이들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노동력을 상실하여 영구적인 가난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근원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보호법이라면 당연히 법정 본인부담금을 폐지하여 병원문턱을 조금이라도 낮추어야 할 것이다.

**1. 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의료보호 2종 법정 본인부담금을 존치하는 정부법안을 철회하라!**

**1. 국회는 의료보호환자의 차별의 근원이 되는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 보호기금 적립금을 조성하는 명시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1. 정부와 국회는 서민층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걸맞도록 의료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

2000. 12. 18.

### **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구로건강복지센타,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보건의료청년회, 서울YMCA,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대,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